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이버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사자모욕죄 신설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77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권리침해정보에 모욕 정보 추가(안 제44조 등)	2
2. 사이버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사자모욕죄 신설 등(안 제 70조 등)	10
3. 명예훼손 ·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안 제44조의7)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권리침해정보에 모욕 정보 추가(안 제44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변경함(안 제44조 제1항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u> 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u>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u>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③ ----- <u>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u> -----

현행	개정안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u>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u>----- ----- ----- ----- ----- ----- -----. -----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현행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u>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 ----- -----<u>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u>----- -----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u>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u>-----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제44조의2) 권리침해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권리침해당사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²⁾.
 -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권리침해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³⁾.
 - (제44조의6)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1)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2)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⁴⁾.

- (제44조의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둠⁵⁾.

○ 개정안은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외에 혐오, 조롱, 비방 표현 등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모욕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그런데 판례는 권리침해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여 침해되는 권리의 범위를 인격권으로 한정하고 있고⁶⁾,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4)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6)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으로도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는 권리침해정보 내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 실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을 보면,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권리침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u>

7) 이성원, ‘사자 모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서울法學” 제30권 제4호, 2023.2.28., p.148-149.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 • 장애 • 인종 • 출신국가 • 성별 • 나이 • 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권리침해정보의 예시에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모욕 피해자도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포섭되지 않는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등 모욕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인격권 측면에서 권리침해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사이버 사자 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사자모욕죄 신설 등(안 제70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다음과 같이 형벌을 신설함.

- (사이버 사자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0조 제3항)

-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0조의2 제1항)

- (사이버 사자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0조의2 제2항)

○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친고죄, 안 제70조 제5항 및 제70조의2 제3항).

○ 재난⁸⁾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대상으로 다음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70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
- 안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모욕죄
- 안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이버 사자모욕죄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u><신설></u>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③ (생략)</u> <u><신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⑤ 제3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u><신설></u>	<u>제70조의2(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자를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u>

현행	개정안
<신설> 제70조의2(벌칙) (생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의3(가중처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재난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제70조제1항·제2항 또는 제70조의2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0조의4(벌칙) (현행 제70조의2와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의 체계 및 개정안의 취지

(1) 형법

○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일반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⁹⁾.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⁰⁾.

- (**사자명예훼손**) 사자(死者)에 대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¹⁾.

○ 한편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²⁾.

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연히 사자를 모욕한 자는 처벌되지 않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¹³⁾.

(2) 정보통신망법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⁴⁾.

-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13)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판결 등

14)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반복·재생산됨에 따라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각각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되며,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자 모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는 처벌되지 않음.

(3)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최근 12·29 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희생자 또는 유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 영상 등이 다수 유통되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음¹⁵⁾.
-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특별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 사자 모욕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재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을 엄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자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15) 정희원, “제주항공 사고는 CG” 유족 조롱한 가짜뉴스…檢 “엄단하겠다”, 한국경제, 2025.5.8.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체계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형법	정보통신망법	
			현행	개정안
명예훼손죄	사실적시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허위사실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u>사자</u> 의 명예를 훼손한 자 - <u>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u>	-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	(안 제70조 제3항)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u>사자</u> 의 명예를 훼손한 자 - <u>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u>
	출판물 등에	(제309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	-

구분		형 법	정보통신망법	
			현 행	개 정 안
	의 한 명 예 훼손	훼손한 자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309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모 욕 죄	모 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u>모욕</u> 한 자 - <u>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u>	-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안 제70조의2 제1항)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u> - <u>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u>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사 자 모 욕	-	-	(안 제70조의2 제2항)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자를 모욕한 자</u> - <u>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u>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 다만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사자모욕죄 신설(안 제70조 제3항 및 제70조의2)

- 정보통신망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사자모욕죄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정보가 확산된 후에는 정정이나 반박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범죄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에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고 건전한 비판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모욕죄**의 경우 ① 모욕죄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고, ②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자신의 부정적 견해와 감정을 표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며, ③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⁶⁾¹⁷⁾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013년, 2016년 및 2020년에 네 차례에 걸쳐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나¹⁸⁾, 이 중 2013년, 2016년 및 2020년에는 각각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모욕죄 합헌결정(2020) 중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요지>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는바, 이로 인하여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모욕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혐오 표현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충돌하는 법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하지 못하고 후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한편, 사자모욕죄의 경우 현재 형법에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형법인 정보통신망법상 사자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자모욕죄 도입 경과를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형법에 사자모욕죄를 신설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박경신,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관한 정책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년, p281

17)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모욕죄를 폐지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109360호(최강욱의원 대표발의), 제2112050호(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18)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2016. 3. 31. 2015헌바206·355(병합) 결정, 2020. 12. 23. 2017헌바456 결정

(의안번호 제2210281호,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자 명예훼손 및 사자 모욕의 경우 주관적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과의 법적 체계성 및 형평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상 사자 모욕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모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축과 자의적 법집행의 우려가 있으며, 사자 명예훼손죄 및 사자 모욕죄의 신설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비판적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형법상 이미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형법상 모욕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사자의 경우 인격권을 상실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자

모욕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이 필요하다더라도 형법 개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재난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가중처벌(안 제70조의3)

○ 형의 가중이란 개별적인 범죄에 관해 법정형을 특정한 경우에 일정한 비율로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총칙에 따른 일반적 가중사유¹⁹⁾ 외에 특정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가중사유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여야 함.

-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명예훼손·모욕의 피해자인 경우가 유일한 가중사유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양형과 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통설은 형벌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책임주의가 양형의 지도원칙이 된다고 보고 있음²⁰⁾.

19)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20)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p. 594.

- 참고로 개별법상 형의 가중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 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²¹⁾, ② 경제범의 경우에 범죄로 획득한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²²⁾, ③ 보호·감독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을 상대로 죄를 범한 경우²³⁾ 등에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범죄의 비난가능성,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범죄피해자 등 다른 피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집단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은 집단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과 형평성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 형법 개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1)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3)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다른 유형의 피해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범죄의 내용과 결과가 동일함에도
피해자의 신분을 이유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정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명예훼손·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안 제44조의7)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제2호의2)
 -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제2호의3)
 - 공공연하게 사자(死者)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제2호의4)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단, 제2호의3의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음(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u>

현행	개정안
<신설>	2의3.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의4. 공공연하게 사자를 모욕 하는 내용의 정보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6호----- ----- ----- ----- ----- ----- -----제1항제2호, 제2호의3 및 제3호-----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사자 명예훼손 정보(제2호의2), 모욕 정보(제2호의3) 및 사자 모욕 정보(제2호의4)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²⁴⁾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²⁵⁾.

2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다만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정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안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자모욕죄가 신설되는 경우 제2호의4의 정보 또한 당연히 위의 불법정보에 포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열거할 실익이 낮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자 명예훼손 정보 및 사자 모욕 정보의 경우 불법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므로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모욕 정보의 경우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불법정보로 명시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자 명예훼손 정보 및 모욕 정보의 경우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현행법상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현행법에 사자 모욕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사자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